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24호 2024. 4. 23(화)

선 람	기관의 장

예 규

○ 남원시 예규 제43호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-----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4년 4월 23일

남원시 예규 제 43 호

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

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(어린이보호구역,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은 평일 08:00~20:00 적용)”을 “(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:00~20:00,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은 08:00~22:00 적용)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후단 중 “별지 제2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단속시간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주민신고제(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)에 의한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단속 시간: 24시간 (<u>어린이보호구역,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은 평일 08:00~20:00 적용</u>)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6조(단속시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(<u>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:00~20:00,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구역은 08:00~22:00 적용</u>)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의견진술, 이의신청) ① 의견진술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1과 같다. 의견진술은 사전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소유자, 운전자,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남원시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<u>별지 제2호서식</u>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19조(의견진술, 이의신청) ①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별지 제1호서식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